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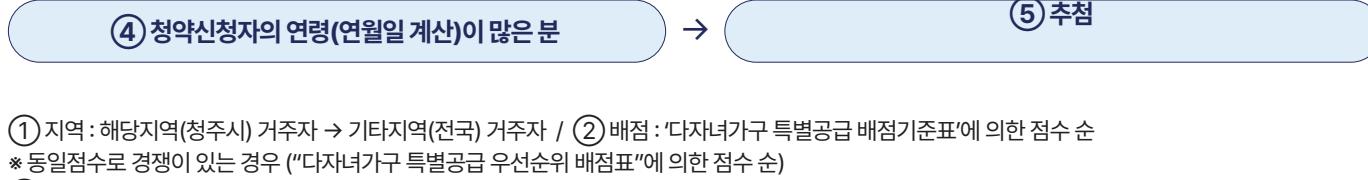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0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는 자
- ② 만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태아 및 입양을 포함)을 둔 자
- ③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 ① 지역 : 해당지역(청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전국) 거주자 /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

- ③ 미성년 자녀 수

- ④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

- ⑤ 추첨

유의사항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태아를 인정받기 위한 청약자는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하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임신부부의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진단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를 확인하며, 입양부부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 자녀(전혼자녀)를 포함 하되, 그 자녀가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됩니다.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됩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본 안내문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 평점 요소 | 총 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① 미성년 자녀 수 | 40점 | 4명 이상 | 40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 |
| | | 3명 | 35 | |
| | | 2명 | 25 | |
| ② 영유아 자녀 수 | 15점 | 3명 이상 | 15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 |
| | | 2명 | 10 | |
| | | 1명 | 5 | |
| ③ 세대 구성 | 5점 | 3세대 이상 | 5 | - 청약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
| ④ 무주택기간 | 20점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⑤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5점 | 10년 이상 | 15 | - 청약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시·도(충청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⑥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점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계 | 100점 | | | |

- ①, ②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③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③, ④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④, ⑤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⑥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